

성희롱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드리는 건의서(안)

안녕하십니까?

저희 「성희롱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 모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희롱을 추방하여 보다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하고자 지난해 10월 각계의 전문인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본 건의서에서는 ‘서울대 교수에 의한 조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전 사회적인 중심사안으로 떠오른 성희롱문제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어야 할 서울대 교수가 성희롱의 가해자였다는 것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바로 얼마전에는 전주의 모여중에서 교장이 자신의 위계와 위력을 남용하여 여교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국민들을 다시 한번 충격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은 그동안 숨겨져왔던 수 많은 성희롱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건들 이외에도 여성단체와 상담기관에는 성희롱의 상담 사례가 끊이지 않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조사된 바로는 조사대상 직장 여성의 87%가 한번 이상의 성희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서울대학교에서 조사된 ‘학내 성희롱 실태 보고’에 의하면 여학생의 83%가 성희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볼때 성희롱문제는 직장 뿐만 아니라 순수한 학문연구의 장인 학교 등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교사나 교수에 의해 일어나는 성희롱은 그 가해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신성한 직업인이라는 것에 더욱 우리 사회에 던지는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대학이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학문을 연마하고 생활하는 남학생이 바로 성희롱의 가해자라는 현실에 또 한번 성희롱문제의 예방과 대책이 시급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런 사건들은 당사자는 물론 대학 전체에 고통을 주는 문제입니다. 학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자신의 학업수행에 지장을 받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 생활도 계속하기 힘들다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전체 학생들과 교사, 교수들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학문연구와 인격도야의 장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학내 성희롱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학교 스스로가 공정한 규정과 대책을 마련하여야겠지만 그 행정의 주무부서는 바로 교육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학내 성희롱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예방과 대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성희롱에 대한 사회, 국가적인 예방과 대책활동이 제도화된 미국의 경우 1972년도 교육개정법에 '모든 학생에 대한 성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성차별의 내용에 물론 성희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1983년 미국 교수협의회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교수가 학생을 만날때의 지침을 마련할 정도로 학내 성희롱문제에 대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희롱문제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고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저희 「성희롱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모임」에서는 교육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1. 교육부는 성희롱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2. 교육부는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작하여 이를 모든 학교에 배포하여야 합니다.
3. 교육부는 대학의 학칙에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대책의 조항을 만들어 이를 공포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4. 교육부는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교과과정에 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행동을 교육하는 성교육프로그램을 교과 과정에 삽입하여야 합니다.
5. 교육부는 교사, 교수 연수 프로그램에 성교육 과정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합니다.
6. 교육부는 대학 평가시에 학내 성희롱에 대한 대학내 정책의 유무와 그 실시를 평가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7. 교육부는 학내 성희롱문제에 대한 진정이나 탄원이 들어올 경우 이를 신속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1995. 2. 21

「성희롱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모임」

.제2차 조찬모임 참가자 일동